발간등록번호 | 11-1210000-000327-14

2009년 귀속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NT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09년 귀속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2009. 11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 리 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원천징수 의무자 및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과 절차가 다양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주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천징수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와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2009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및 원천징수 실무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 등을 소득종류별로 분류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e-Book으로 수록하여 원천징수 실무자는 물론 국세공무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이 책자가 원천징수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 11.

법인납세국장 이 건환

Contents

1장 원천징수 제도 개요

1. 원천징수_ 12
2. 원천징수의무자_ 12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_ 13
4. 원천징수 신고 · 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_ 17
5. 원천징수 제외대상_ 20
6. 원천징수 시기_ 21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_ 20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_ 22
9.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_ 25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_ 28
11. 지급명세서 제출_ 34
1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_ 35
13.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_ 37
14. 경정 등의 청구 제도_ 39

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_ 42
2. 근로소득 구분 및 과세범위_ 43
3.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_ 45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_ 45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_ 47
6. 비과세 근로소득_ 50
7.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_ 51
8. 근로소득 계산_ 55
9.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_ 56
10. 인적공제_ 60
11. 연금보험료_ 66
12. 특별공제_ 67
13. 그 밖의 소득공제_ 87
14. 세액 공제_ 98

3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이란_ 103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수입시기_ 106
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_ 106
4. 퇴직소득의 과세체계_ 107
5. 퇴직소득금액 계산_ 108
6. 퇴직소득공제_ 109
7.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_ 111
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_ 112
9.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_ 113
10. 퇴직소득 세액공제_ 114
11.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_ 114
12. 퇴직소득세액 정산_ 118
13. 근로자퇴직등통지서 통보 절차_ 118
14.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_ 119
15.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비치 · 기록_ 120
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_ 121
1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_ 121
18. 연금소득 과세개요_ 122

4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의 종류_ 126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_ 130
3. 원천징수_ 130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_ 131
5. 기타소득금액_ 131
6. 원천징수세율_ 133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_ 133
8. 지급명세서 제출_ 134
9.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_ 135

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_ 136
2. 원천징수의무자_ 138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_ 138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_ 139
5. 지급명세서의 제출_ 139
6.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_ 140

Contents

6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1. 금융소득_ 143
2. 이자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_ 144
3. 배당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_ 146
4. 집합투자기구_ 147
5. 비과세 금융소득_ 149
6.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_ 150
7. 세금우대종합저축_ 152
8. 금융소득 수입시기_ 154
9. 금융소득 원천징수 시기_ 156
10. 소득세 원천징수_ 157
11. 법인세 원천징수_ 159
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_ 160
13.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범위 및 시기_ 161
14.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범위 및 시기_ 161

7장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판정_ 162
2. 과세대상소득_ 164
3. 원천징수의무자_ 167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_ 168
5. 원천징수 시기_ 168
6. 과세표준 계산_ 169
7. 원천징수 세율_ 170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_ 171
9. 지급명세서 제출_ 171

8장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 전자 신고_ 173
2. 원천세 전자신고 · 납부 Q&A_ 183
3.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_ 187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안내_ 193
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_ 198

색인

원천징수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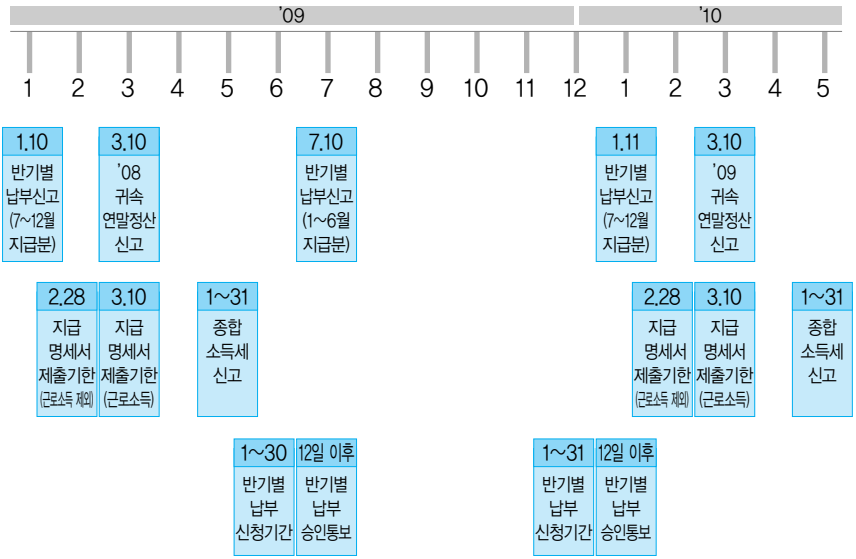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다만, 원천세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연말정산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 실제로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누락 또는 잘못 계산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말일(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해당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반기별납부 신청 :**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 납부 가능
  (신청시기 : 6월, 12월)

원천징수 관련 전산 업무 일정

전 산 업 무	일 정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통 – 소규모 사업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작성 가능	'09.9월 초~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합산제출, 휴폐업자 수시 제출, 중도퇴사자 수시 제출 선택 가능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제출	'09.10월 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10.1월 중순~
• 홈택스 지급명세서 변환 프로그램 제공	'10.1월 중순~
• 지급명세서 홈택스 전송	'10.2월 초~
•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환급신청 포함) 전자 신고	'10.2월 중순 부터 3.10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전송	수시

회사의 연말정산 표준 일정(안)

+ 요 약 +

1.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자료 확인('09.12월)
2.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09.12월)
3.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10.1월초)[회사 → 근로자]
4.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1월 말까지)
5.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2월 말까지)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 포함),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자료 확인('09.12월)

▣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 세법 해설」 책자 및 개정 서식 확인

※ 일반적으로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확인 필요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09.12월)

▣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가능('09. 9월 개통)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10.1월 초)

▣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및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회사 일정 및 근로자 업무 편의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처리 일정 및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0.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환급세액 지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공제용 증빙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국세청 제공) 이용방법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유의 사항
- 소득공제신청서 작성방법

※ 국세청 발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참조(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10.1월 말까지)

▣ 급여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기부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 근로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등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10.2월 중순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10.2월 말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공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

▣ (지급명세서) 오류 체크 실시 및 오류 보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10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시 3월 10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환급신청) 회사 전체적으로 과다한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이용(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 연말정산 Man-to-Man 상담제도 시행

- 연말정산시 회사의 실무자에게 세무서의 상담공무원을 지정(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예정)
  - 근로자가 회사의 실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실무자가 Man-to-Man 상담을 이용하여(www.yesone.go.kr/call) 지정된 세무서의 상담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제공받아 근로자에게 전달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상담전화가 집중되어 통화연결이 어려우므로 Man-to-Man 상담을 이용하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음

1장

원천징수제도 개요

1. 원천징수

▣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주민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원천징수 적용 소득	원천징수 적용 제외 소득
세금 부담자(담세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발생)	신고시기에 납부 (일시납부 부담 발생)

2.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1]를 원천징수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 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 소득, 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대상 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근로자

1) 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에 해당됨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 신고 · 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 세무서에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사례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 수 세 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0	40,000,000	3,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20	480,000,000	15,000,000	200,000				
	가 감 계	A10	40	520,000,000	18,200,000	200,000			18,200,000	200,000

② 납부서

귀속연도/기 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근로소득세						1	8	2	0	0	0	0	0
농어촌특별세								2	0	0	0	0	0
계						1	8	4	0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민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 ·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세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민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국세 원천징수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	비 고
개 인	○	○	
내국법인	○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주민세 납부
외국법인	○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 · 군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주민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2]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할 주민세 계산

법인(소득)세 = 소득금액 × 제한세율 × 10/11
주민세 = 소득금액 × 제한세율 × 1/11

2)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제외한 국가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 · 군에 납입(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0	40,000,000	3,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 감 계	A10	20	40,000,000	3,200,000				3,200,000	
퇴 직 소 득		A20	3	100,000,000	1,500,000				1,500,000	

▪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구 분	인 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④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갑종근로소득	20	3,200,000	320,000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갑종퇴직소득	3	1,500,000	150,000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⑫ 법인세법 제98조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⑬ 농업소득세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에 의한 특별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⑯ 계	23	4,700,000	470,000

▣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세 납부방법

구 분	주민세 납부 홈페이지
전지역(서울특별시 제외)	위택스(www.wetax.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4. 원천징수 신고 · 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신고 · 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제출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관련 서식 찾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내려받기를 통해 사용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서식이름]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검색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납세자가 국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한 납부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소득세할 · 원천소득세할 ·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부서 작성도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 홈택스 전자신고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 신고방식은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신고서변환방식」으로 구분
-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도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홈택스 전자납부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가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전자납부 가능
- 홈택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소유시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평일09:00~22:00(단, 상호저축은행 09:30~19:00)
-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세금신고분납부

※ 세금납부 항목

구 분	내 용
신고분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납부	전자고지분 고지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 납부	신고하거나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납부기한후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중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에 대해 납부
주민세 연계 납부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안내

※ 체납세액 조회 가능

▪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 율	비 고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10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10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5/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100	특정채권 20/100 ('01.1.1이후 15/100)
	그 외 이자소득금액	14/100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100	
	그 외 배당소득	14/100	
사업	의료보건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100	
근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8/100	
연금	국민연금 · 직역연금	기본세율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퇴직연금 · 사적연금	5/100	
기타	기타소득금액(봉사료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20/100	
	복권당첨금 중 3억원 초과분	30/100	3억원이하는 20%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봉사료 수입금액		5/100	

5. 원천징수 제외대상

▣ 소득세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 접대부 · 댄서 등이 지급받는 사업소득

▣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한 경우

- 원천징수 배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

구 분	검 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되었기에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임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6.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 근로 · 퇴직소득

대 상	교 부 시 기
계속근로자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교부
중도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그 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소 득 구 분		교 부 시 기
이자소득 · 배당소득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	국민연금 · 직역연금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퇴직연금 · 사적연금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		지급하는 때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 수정란에 "○" 표시

②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동일하게 기재

③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2. 환급세액 조정]을 새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을 반으로 나누어 상단에 붉은 색으로 옮겨 기재

④ 하단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정색으로 기재

※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함(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작성 사례

사례

'09.08월분 급여를 2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함

당초 원천징수 현황 및 수정 내용

구 분	소득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일	인 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당 초 ('09.08월분)	근로(A01)	2009.08	2009.08	2009.9.10	1	3,000,000	58,730
	(수정할 내용) 8월에 입사한 직원 1명에 대한 급여 3백만원 및 원천징수세액을 누락하였음을 10월에 확인하여 11월 10일까지 수정신고						
수 정 ('09.08월분)	근로(A01)	2009.08	2009.08	2009.11.10	2	6,000,000	117,460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5% ≤ (미납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세액 × 10%						
'09.10월분	근로(A01)	2009.10	2009.10	2009.11.10	2	6,000,000	117,460

① 당초 신고 ('09.8월 귀속, '09.9.10 제출)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 감 계	A10	1	3,000,000	58,730			20,000	38,73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3,000,000	58,730			20,000	38,73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금융기관)	⑰ 기 타				
20,000		20,000				20,000	20,000	0	

② 수정 신고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9.8월 귀속 수정, '09.11.10 제출)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2	3,000,000 6,000,000	58,730 117,460		2,93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 감 계	A10	1 2	3,000,000 6,000,000	58,730 117,460		2,930	20,000 20,000	38,730 100,39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2	3,000,000 6,000,000	58,730 117,460		2,930	20,000 20,000	38,730 100,39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금융기관)	⑰ 기 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0 0	

▪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9.10월 귀속, ’09.11.10 제출)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	6,000,000	117,46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 감 계	A10	2	6,000,000	117,460				117,460	
수정신고(세액)		A90			58,730		2,930		61,660	
총 합 계		A99	2	6,000,000	176,190		2,930		179,12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 청 액
⑫전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 반 환 급	⑯ 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 타				

* [참고] 수정신고(세액) A90 기재금액 계산과정 해설

구 분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가산세	당월조정	소득세 등	농특세
A90 기재내역	차이(②-①)		58,730		2,930	-	61,660	
① 당 초 분	1	3,000,000	58,730			20,000	38,730	
② 수 정 분	2	6,000,000	117,460		2,930	20,000	100,390	

☞ 편리한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로 정기분 신고서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 홈택스홈페이지 →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직접작성방법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9.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조정환급

▣ 개 념

- 원천징수 세액 중 타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후 세액을 납부
-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조정 환급 사례

-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와 환급할 근로소득세의 조정환급 방법
  - ㉠ 근로소득 환급할 세액 : 2,300(= 4,700 + △7,000)
  - ㉡ 각 소득종류별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포함)이 각각 있는 경우 조정환급 가능
  - ㉢ 조정환급 방법 : 조정환급할 세액(근로소득세 △2,300원)을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500원)이 있는 소득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조정환급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기재
  - ㉣ 조정환급 순서 : 코드 순서대로(A10, A20, A30 …)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50,000	4,7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0	220,000	△7,000	500				
	가 감 계	A10	20	270,000	△2,300	500		500	0	0
총 합 계		A99	20	270,000		500		500	0	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금융기관)	⑰ 기타				
			2,300			2,300	500	1,800	

환급신청

▣ 환급신청 요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환급신청서 작성

사례

- '10.02월분 급여(2월 지급)의 원천징수세액 : 30만원
- '09귀속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명	소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세액	조정환급 세액	환급 신청액
			계	종전근무지	현 근무지			
김나연	70,000,000	1,200,000	1,400,000	-	1,400,000	△200,000	150,000	50,000
김태현	60,000,000	1,000,000	1,500,000	-	1,500,000	△500,000		500,000
정인성	30,000,000	800,000	750,000	-	750,000	50,000		
김보민	40,000,000	900,000	800,000	-	800,000	100,000		
합 계	200,000,000	3,900,000	4,450,000	-	4,450,000	△550,000		550,00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4	200,000,000	△550,000					
	가 감 계	A10	8	216,000,000	△250,000					
총 합 계		A99	8	216,000,0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 청 액
⑫전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 반 환 급	⑯ 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 타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 원천징수환급신청서 부표작성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인원	소 득 지급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 감 납부세액	조정환급 세 액	환 급 신청액
				계	기납부세액 (주, 현)	기납부세액 (종,전)			
근로	4	200,000,000	3,900,000	4,450,000	4,450,000		△550,000	300,000	250,000
계	4	200,000,000	3,900,000	4,450,000	4,450,000		△550,000	300,000	250,000

㉠ 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기재

㉡ 인원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인원을 기재(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A04란 참조)

㉢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소득지급액을 기재(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A04란 참조)

㉣ 결정세액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결정세액을 기재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환급할 세목의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기재

㉥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 조정환급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내에서 납부할 세액과 상계된 환급할 세액의 합계

㉧ 환급신청액 : 차감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환급신청액의 합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원천세 신고 납부 구분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매월 납부</td><td>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 급여 등 매월 지급이 있는 경우 매월 신고 · 납부(1년에 12번)</td></tr>
<tr><td>반기별 납부</td><td>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 납부 가능
<table>
<tr><th>지급시기</th><th>신고 납부시기</th></tr>
<tr><td>올해 7월부터 12월까지</td><td>2010년 1월 10일까지</td></tr>
<tr><td>내년 1월부터 6월까지</td><td>2010년 7월 10일까지</td></tr>
</table>
※ 신고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td></tr>
</table>

▣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 승인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2009년 하반기 기준)</th></tr>
<tr><td rowspan="2">신청 요건</td><td>종업원수</td><td>2009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다만,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법인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td></tr>
<tr><td>제외대상</td><td>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td></tr>
<tr><td colspan="2">신청기간</td><td>2009년 12월 1일 ~ 12월 31일</td></tr>
<tr><td rowspan="2">신청 방법</td><td>전자신청</td><td>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
세무서류신고 · 신청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td></tr>
<tr><td>서면신청</td><td>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td></tr>
</table>

▣ 반기별 신고 ·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인원

구분항목	인원 작성 방법	지급액 작성 방법
간이세액(A01)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반기 동안 지급액 합계액 기재
중도퇴사(A02)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 기재	
퇴직소득(A2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

구 분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
7월 신고 · 납부분	200X년 1월	200X년 6월	200X년 7월
1월 신고 · 납부분	200X년 7월	200X년 12월	200Y년 1월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A04(연말정산) ⑥ 소득세가 "△"인 경우] 신고 방법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

방 법	내 용
환급신청	• 1월~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신청 (3.10일까지) 환급신청 가능액 = ㉮ − ㉯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 1월 및 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7월 10일까지 반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3월 환급 신청시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 · 납부
조정환급	• 7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환급세액은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 (3월에 환급신청 하지 아니함)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매월 납부로 전환시 원천세 신고방법

▪ 반기 시작(개시)월부터 매월납부로 전환되기 전 월(포기월)까지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작성

2009.10월 반기별 납부를 포기한 경우 2009.11.10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09년 7월),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09년 10월)을 기재

사례

▪ (주)끌림상사(원천세 반기별 납부)의 원천징수세액('10.1월 ~ '10.6월)

귀속 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조정	납부할 세액
'09.12월	'10.1월	1,500	–	–	1,500
'10. 1월	'10.2월	2,000	–	–	3,500
'09귀속 연말정산	'10.2월	(농특세 500)	7,000	–	3,000
'10. 2월	'10.3월	1,200	–	–	–1,800
'10. 3월	'10.4월	1,000			–800
'10. 4월	'10.5월	2,000	–		1,200
'10. 5월	'10.6월	2,000	–	–	3,200
합 계		10,200	7,000	500	3,200

- '10년 1월~ 2월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 3,500원
- '09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7,000원, 농특세 500원

  * 소득세 △7,000원 = 납부할 세액 2,500원 + 환급할 세액 9,500원

① 환급신청시

㉮ 환급 신청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월 10일 제출)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0년 1월
매월	반기 (○)	수정	연말 (○)	소득 처분	환급 신청 (○)		③지급연월	2010년 2월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50,000	3,5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0	220,000	△7,000	500				
	가 감 계	A10	20	270,000	△3,500	500		500	0	0
총 합 계		A99	20	270,000		500		500	0	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 청 액
⑫전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 반 환 급	⑯ 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 타				
			3,500			3,500	500	3,000	3,000

㉠ 귀속연월 : 반기납 신고의 경우 귀속월은 1월

㉡ 지급연월 : 연말정산의 경우 2010년 2월로 작성

㉢ 간이세액(A01) : '10.1월~ 2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기재(1,500 + 2,000)

㉣ 연말정산(A04) : '09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내역 기재

㉤ 근로소득 가감계(A10) : 근로소득(A01~A04) 가감한 세액 기재하며 다음의 작성 방법에 유의

구 분	잘못된 방법	올바른 방법
⑥ 소득세 등 〈납부(환급) 금액〉	• 코드별로 납부(환급) 간이세액(A01) 3,500원 납부 연말정산(A04) 7,000원 환급	• 가감한 금액 납부(환급) 간이세액과 연말정산세액을 가감 납부세액은 없고 3,500원 환급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동일세목의 가감한 금액을 기재	타세목간 조정환급한 세액 기재 농어촌특별세 500원과 조정 환급한 금액만 기재

㉯ [2. 환급세액 조정] 작성방법

구 분	작성방법	금액
⑮ 일반환급	A10, A20, A30, A47.....A90 등의 ⑥ 소득세 등이 "△"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	3,500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차감잔액 + ⑮ 일반환급 + ⑯ 신탁재산 + ⑰ 기타	3,500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총합계(A99)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기재	500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	3,000
㉑ 환급신청액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내에서 신청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작성하여야 함	3,000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7월 10일까지 제출)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0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10년 6월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90,000	6,2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 감 계	A10	10	90,000	6,200				6,200	
총 합 계		A99	10	90,000	6,200				6,2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 청 액
⑫전월 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 반 환 급	⑯ 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 타				
3,000	3,000	0							

㉠ 귀속연월 : 귀속월은 1월

㉡ 지급연월 : 지급월은 6월

㉢ 간이세액(A01) : '10년 3월 ~ 6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 기재(3월에 이미 신고한 '10.1월 ~ 2월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은 제외)

㉣ ⑫ 전월 미환급세액은 3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⑳ 차월 이월환급세액의 금액을 기재

㉤ ⑬ 기환급 신청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 세액(3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㉑ 환급신청액)을 기재

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0년 1월
매월	반기 (○)	수정	연말 (○)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10년 6월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40,000	9,7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0	220,000	△7,000	500				
	가 감 계	A10	20	360,000	2,700	500			2,700	500
총 합 계		A99	20	360,000	2,700	500			2,700	500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기관)	⑰ 기타				

11.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그 외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홈택스(www.yesone.go.kr)에서 제출(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적용)
-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 홈택스 → 과세자료 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 기타 · 사업소득 → '09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 제출 대상 3. 수시(월별)분할 제출 선택

▣ 지급명세서 수정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 수정신고 · 인정상여처분으로 수정사항이 발생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

①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내역을 옮겨 기재
② 당초 지급명세서의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Ⅱ 비과세소득], [Ⅲ 세액명세], [Ⅳ 정산명세], [㊽ 소득공제 명세]를 수정 작성하는 지급명세서 해당란을 반으로 나누어 상단에 붉은 색으로 옮겨 기재
③ 하단에는 수정사항과 수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검정색으로 기재

1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 납세지

<table>
<tr><th colspan="2">원천징수의무자</th><th>소득세 납세지</th><th>법인세 납세지</th></tr>
<tr><td colspan="2">① 거주자</td><td colspan="2">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td></tr>
<tr><td colspan="2">② 비거주자</td><td colspan="2">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td></tr>
<tr><td rowspan="3">③ 법인</td><td>일반</td><td>㉠ 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 독립채산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td><td>• ㉠, ㉡의 납세지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 외국법인 :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td></tr>
<tr><td>본점일괄납부승인</td><td colspan="2" rowspan="2">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td></tr>
<tr><td>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td></tr>
<tr><td colspan="2">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td><td colspan="2">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td></tr>
</table>

본점일괄납부

▣ 개 념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나
- 국세청장의 승인에 의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승인 등

-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 신청할 수 있음

- 승인 및 통지

  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접수 후 당해 법인의 전자계산조직 등을 검토하여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통지

- 신고 및 납부방법

  승인 받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본점 등에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고 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 불가)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13.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가산세 구조

5% ≦ 과소 · 무납부세액 × 3/10,000× 일수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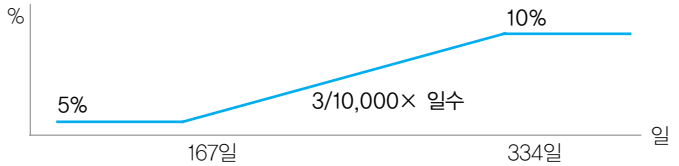

* [주의] 신고 · 납부기한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소 · 무납부세액의 5% 부담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3/10,000×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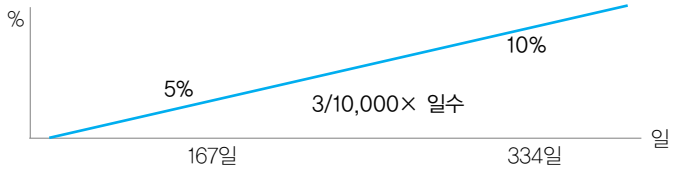

* [참고] 소득세 · 법인세 등은 납부 기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원천징수의 경우 가산세의 최저금액의 과소 · 무납부세액의 5%를 적용하는 이유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5%부터 시작됨.

* [주민세] 국세와 달리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지방세법 § 179의 3 ③)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의하여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납세조합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주민세의 경우 10%)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제출기한
근로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4.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5월말
	4월 ~ 6월	7월말	8월말
	7월 ~ 9월	10월말	1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3월말
그 외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3월말

▣ (가산세 적용 기준)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4. 경정 등의 청구 제도

▣ 최초신고 · 수정신고 · 결정 · 경정 납세의무의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 원천징수 소득 중 경정청구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공적연금)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
그 외 소득 없음	○	○	○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공적연금)		○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		○		

※ ○ : 경정청구 가능 소득

▣ 경정청구 자격 검토

구 분	내 용
㉮ 소득 종류	☐ 연말정산(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 퇴직소득
㉯ 소득세 납부	☐ 세액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
㉱ 경정청구자	☐ 원천징수의무자, ☐ 당해 소득자

※ ㉮, ㉯,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정청구 가능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 근로소득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구 분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제출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④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⑤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당초분, 수정분) ③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시 당초분,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④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제출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당초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수정할 지급명세서 해당란의 상단에 붉은 색으로, 수정 내역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

사례 | 2009 귀속 수정 내용

구 분	당초 분	수정 분
총 급여	40,000,000원	45,000,000원
부양가족	2명	3명 장애인이며 70세인 어머니 추가
기부금 공제	1,000,000원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1,000,000원 추가 (전체 기부금 2,000,000원)
교육비 공제	–	2,000,000원(중학생 자녀)
보험료 공제 (보장성보험)	–	750,000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원리금 상환액 2,000,000원
결정세액	888,800	319,360
환급세액		569,440

▪ 수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Ⅳ 정산명세								
	㉑ 총급여(⑯ 또는 ⑯ − ⑱ − 3))			40,000,000 45,0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㉒ 근로소득공제			12,250,000 12,750,000		㊹ 연금저축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27,750,000 32,250,000		㊹-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㉔ 본 인	1,500,000 1,500,000		㊹-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㉕ 배 우 자	1,500,000 1,500,000		㊺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㉖ 부 양 가 족 (2 명) (3 명)	3,000,000 4,500,000		㊻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㉗ 경 로 우 대 (0 명) (1 명)	0 1,000,000		㊼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㉘ 장 애 인 (0 명) (1 명)	0 2,000,000		㊽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㉙ 부 녀 자			㊽-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㉚ 자녀양육비 (명)					
			㉚-1 출산·입양자 (명)			㊾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㊿ 종합소득 과세표준		16,180,000 10,580,000	
		㉛ 다자녀추가공제 (2 명) (2 명)		500,000 500,000	(51) 산 출 세 액		1,388,800 634,800	
		연금보험료공제	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1,500,000	세액감면	(52) 「소득세법」		
			㉜-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53) 「조세특례제한법」		
			㉝ 퇴직연금소득공제	800,000 800,000		(54)		
		특별공제	㉞ 보 험 료	1,350,000 2,100,000				
			㉟ 의 료 비	420,000 270,000		(55) 세액감면 계		
			㊱ 교 육 비	0 2,000,000	세액공제	(56) 근로소득	500,000 315,440	
			㊲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0 2,000,000		(57) 납세조합공제		
			㊲-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0 0		(58) 주택차입금		
			㊳ 기 부 금	1,000,000 2,000,000		(59) 기부 정치자금		
			㊴			(60) 외국납부		
			㊵ 계	2,770,000 8,370,000				
			㊶ 표준공제			(63) 세액공제 계	500,000 315,440	
	㊷ 차감 소득금액			16,180,000 10,580,000	결 정 세 액 (51)−(55)−(63)		888,800 319,360	

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이란?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 봉급 · 급료 · 세비 · 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다른소득과 구분

- (퇴직소득과 구분)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소득 종류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고문료

구 분	소득 종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그 외 자주 묻는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근로소득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포상금)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대가 ※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월정액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2. 근로소득 구분 및 과세범위

▣ 소득 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외근로	과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거주 외국인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근로	과세 제외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

구 분	개 념	과세방법
갑종 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미국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 포함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
을종 근로소득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3]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가능)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 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근로소득으로 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8%×[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분기별 지급금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다만 4분기 지급액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봄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 칙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예 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사택의 범 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①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취득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차액

②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 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보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당해 보험이 임직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 또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 • 사용자는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 •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 연금의 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4]은 근로소득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 특례 요건

대상자[5]	개별 요건	공통 요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종업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영위[6]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7] • 주식의 매수가액 소정의 가액이상[8] • 양도 불가능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9]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벤처기업의 종업원[10] (1999.1.1. 이후 최초 부여분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한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종업원[11] (2001.1.1. 이후 부여분부터)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한 법인	
그 외 기업의 종업원	당해 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5)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

6) 숙박 및 음식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미용 ·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7) 창업 · 신기술사업법인, 벤처기업, 부품 · 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약정내용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 과세특례 제외자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지배주주 및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12]

▪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기 준	특례 한도
1999.12.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1~2000.12.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2006.12.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 2000년 부여분과 2001년 이후 부여분을 2005년에 행사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

[2000년 부여분] 매수가액 3천만원 한도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1년 부여분]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수가액 3천만원 한도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여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서면1팀-91, 2006.01.24)

8)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제2항의 가액의 산술평균가격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그 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과 액면가액 중 큰 금액

9)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대학교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11) 부품 · 소재 전문기업에 파견된 부품 · 소재 통합연구단 소속 연구원 등 포함

1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당해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실제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가능

▪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그 행사를 청구한 날

※ 주식매수에 대하여 청구시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회사에 청구한 날로 봄

▪ 주식의 시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 그 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원천징수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6. 비과세 근로소득

구 분	내 용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학자금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3]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외국인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임원 또는 사용인은 포함하나 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14]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15]

7.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 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 받는 수당도 포함

▣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가능)을 종업원(임원 포함)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일직료 ·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3) "식사 ·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14) 총급여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15)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대상자

①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 ·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② 다음 연구기관의 종사자

<table>
<tr><th>대상 연구기관</th><th colspan="2">대상 근로자</th></tr>
<tr><td>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td><td rowspan="3">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td><td rowspan="3">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자 제외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유리·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td></tr>
<tr><td>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td></tr>
<tr><td>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td></tr>
</table>

③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중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①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 상 자	
분 류	상세 내역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 · 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통계청장 고시 내용 찾아보기**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찾아보기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통계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안내문

②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고유개념

개 념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제외금액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재계산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 월차수당(다만,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검토시 적용되는 월정액급여 개념

※ 월정액급여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③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 과 세 소 득	한 도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한 도	월 100만원,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대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됨

8. 근로소득 계산

▣ 근로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 가액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구 분	적용 환율 기준일	적용환율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정기 급여일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메뉴 중 〔환율조회〕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형태			근로소득 계산 방법
물품으로 지급	지급자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당해 업자의 판매가액
		그 외	정상가액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지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준용[16]

16)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9.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 즉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며 귀속연도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임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인정상여[17]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는 연도 또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당해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지로 수입한 금액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17)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근로소득 과세 개요

① 일용근로소득

▪ 일당 지급 시 원천징수 (연말정산대상이 아님)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8%)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경우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② 일반근로소득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 다음해 3.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정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 확정 →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 없음)

*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만으로 산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세액감면 및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

▣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해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

* '09귀속 매월 급여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09.2.4.개정)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 · 계산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 (과세대상 학자금 지급 시) 학자금을 차감한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 급격한 세부담 방지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수	구 분
1인 이하	일반
2인 이상	다자녀

▪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계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방법1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방법2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경우 방법1의 (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지급대상기간 월수 계산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9+3)/2 = 6개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기본 · 추가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국민 · 기타 · 퇴직연금) ㉰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 인적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 소득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기본공제란에 "○" 표시하고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 입양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 명시되어야 함)

– 그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기본공제 유의 사항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간 금액으로 공제
-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의 범위·연령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관계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18]

18)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단서

① 기본공제 대상자 및 요건

구 분		생계 요건	연간소득금액	연령요건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
근로자 본인		요건 없음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요건 없음
부양가족[19]	직계존속[20]	충족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21]	충족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22]	충족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보호대상자	충족	100만원 이하	요건 없음

② 공제 여부의 판정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기본공제 대상 연령이 정해진 경우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함

19)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

20)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혼인중이 입증되고, 사실혼 제외) 포함

21) 다음의 경우를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아동

22)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외

③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고
- 당해 연도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

- **배우자의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부양가족의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④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가능[23]

- 다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1인당 연 100만원)는 당해 직계비속 등을 인적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가능

23)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의 공제대상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⑤ 생계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규정 적용 가능
- 근로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동거가족 상황표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일시퇴거 사유	제출 서류	
	퇴거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취학	당해 학교(학원 등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질병의 요양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기준 요건(연간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산정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임

▣ 추가공제

소득자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공제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공제

구 분		추가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해당 과세기간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한 추가공제는 '08.1.1 이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	
6세 이하 입양자		1인당 연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		1인당 연 200만원	
해당 과세기간 입양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구 분	주 의 사 항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제한을 받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해당 자녀가 20세 초과하더라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됨 (자녀가 2명이상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추가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 제한 받지 않음(다만, 총급여액의 3%이상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교육비 공제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제한을 받지 않음 • 해당 장애인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비에 대해 공제 가능

▣ 장애인

구 분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전자민원 G4C(www.egov.go.kr)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표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24]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소득 46011-2812, 1997.11.01)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5.12.08)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서일46011-10490, 2003.04.18)

24)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방법

제 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 제외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후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자 변경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동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가능

▣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기본공제한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금액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	0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11. 연금보험료

▣ 공제대상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12.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특별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재경부 소득 46073-1, 2000. 1. 11)

❶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비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4.78%)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근로자가 보험료납입영수증* 등을 제출	보험료 합계액 기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보험료 합계액 기준

* 보험료 공제 가능한 보험 확인방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

▣ 보험료 공제시 주의사항

- 당해연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하며,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468, 2006.04.12)
-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당해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를 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공제 여부(법인46013-3535, 1996.12.18)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공제 불가능

②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됨

▪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2009.12.31.까지 지출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장애인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의미하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함

▣ 공제 절차

① 근로자의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되는 금액이 없음

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 근로자는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의료비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③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⑥본인 등 해당여부"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의 각종소득공제항목(의료비)란 및 의료비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 기재

의료비지급명세서란 ⑥ 본인 등 해당여부		소득공제신고서 기재방법 (특별공제/의료비)	공제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 (표시 "○")인 경우	➡	합계금액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인 자란에 기재	공제한도 제한 없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표시 "×")인 경우		합계금액을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란에 기재	700만원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지출 항목	증빙서류	비 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08.7.1 이후)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별 지급내역 기재)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연간 지급내역 기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기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 공제되지 않는 비용 예시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
-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처	작성자	작성대상
원천징수의무자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의료비 공제 대상 지급액 전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액 전체

– 의료비 공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⑥ 본인등 해당여부란" 작성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 :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공제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의료비공제 대상자	⑥ 본인 등 해당여부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코드	⑨ 건수	⑩ 금액
ㄱㄱㄱ	○		1		1,000,000
ㄴㄴㄴ	×		1		1,000,000

*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⑦ 사업자등록번호와 ⑨ 건수는 기재하지 않음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공제 대상자별, 지급처별로 구분하여 작성(⑦ 사업자등록번호 · ⑨ 건수란 작성)

③ 교육비 공제

▣ 교육비 공제 대상 등

▪ 대상자 :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대상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를 하지 않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제외)

▪ 공제 가능한 지출액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을 합산한 금액

<table>
<tr><th>교육대상자</th><th>교육비</th><th>한도</th><th>비 고</th></tr>
<tr>
<td>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td>
<td>•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25]에 월 단위로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교습을 받고 지급한 수강료</td>
<td>1인당 공제한도
<table>
<tr><th>구분</th><th>한도</th></tr>
<tr><td>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td><td rowspan="2">300만원</td></tr>
<tr><td>초 · 중 · 고</td></tr>
<tr><td>대학생</td><td>900만원</td></tr>
</table>
</td>
<td>* 포함되는 것
<table>
<tr><th>대상</th><th>내용</th></tr>
<tr><td>초 · 중 · 고</td><td>교과서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 구입비 제외)</td></tr>
<tr><td>중 · 고</td><td>교복구입비 (50만원 이내)</td></tr>
</table>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대상자는 유학요건을 갖추어야 함</td>
</tr>
<tr>
<td>근로자 본인</td>
<td>•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td>
<td>한도 없음</td>
<td>* 포함되는 것
<table>
<tr><th>대상</th><th>내용</th></tr>
<tr><td>초 · 중 · 고</td><td>교과서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 구입비 제외)</td></tr>
<tr><td>중 · 고</td><td>교복구입비 (50만원 이내)</td></tr>
</table>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외</td>
</tr>
</table>

교육대상자	교육비	한도	비 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한도 없음	– 직계존속 포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배제 금액)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25) 학원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교육비 공제시 주의사항

- 생계를 같이하나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생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임
  (서면1팀-1524, 2007.11.06)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 · 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전 · 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현재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156, 2006.02.06)

-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
  (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세과-320, 2009.04.09)

- 자녀가 국외유학 중 당해연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
  (서면1팀-317, 2004.03.02, 공제한도는 현재 기준)

▣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비고
국내교육기관 학생		교육비납입증명서	간소화 제공
국외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접 영수증 발급
국내근무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		교육비납입증명서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간소화 제공
	학교 외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 재활교육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직접 영수증 발급

❹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공제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1,0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특별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마련저축** (→ 13. 그 밖의 소득공제 – ❸ 설명〈p.88〉 참조)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저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²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이하 주택)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 해당주택은 제외

구 분	배 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①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요건[26]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차입금[27]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28]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2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 •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26)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

28)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경우 상환기간 계산 →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29)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주택 양수인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내용

구 분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여야 함.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상환기간 계산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다음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 계산)	주택양수인이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해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고, 연장이나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주택분양권의 가격)가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02.12부터 2010.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 이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③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table>
<tr><th>공제대상자</th><th>무주택자인 세대주</th></tr>
<tr><td>주택분양권</td><td>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td></tr>
<tr><td>가액요건 및 가액</td><td>(가액 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가액)
• 조합원 입주권
<table>
<tr><th>청산금을 납부한 경우</th><th>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th></tr>
<tr><td>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td><td>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td></tr>
</table>
• 그 외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td></tr>
<tr><td>차입금 요건</td><td>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td></tr>
<tr><td>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기간</td><td>•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td></tr>
<tr><td>공제 제외</td><td>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td></tr>
</table>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 특례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한다.

▣ 주택자금공제 사례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08.5.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488, 2009.06.04)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53, 2009.05.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456, 2009.05.27)

❻ 기부금 공제

▣ 공제대상자 및 공제한도

▪ 공제대상 기부금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구 분	내 용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정치자금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가능)
기부처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

▪ 기부금별 공제한도

구 분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적용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5%),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15%)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 적용기부금 – 30%한도 적용 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개인 기부 기준)

구 분	해당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학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금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문화예술진흥기금(2009년까지)

구 분	해당 기부금
50%한도 적용 기부금 (2009년까지)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0%한도적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정부 인가 문화 · 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부금 공제 방법

▪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영수증과 공제받을 기부내역을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가 타당한 지 검토하고 기부금 공제금액이 50만원*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 내역을 전산파일형태로 작성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2008귀속 : 100만원, 2010귀속부터 : 전부

▣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구 분		⑨ 기부내용	⑩ 기부연월	기 부 처		⑬ 금 액	⑭ 기 부 자		
⑦ 유 형	⑧ 코드			⑪ 상 호 (법인명)	⑫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 계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정치자금	20								
법 정	10	현금	09.12	○○고아원	100-82-00001	600,000	현금	금잔디	680101-2111111

-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45호의 2 서식)의 기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동일 기부처에 대해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하고,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은 기재대상이 아님)이 있는 경우 다른 기부금보다 기부내역을 먼저 기재하여 작성
- 유형(⑦) 및 코드(⑧)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기부금 종류	유 형	코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제외)	법정	10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	20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진흥기금출연	21
50%한도 적용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제외)	조특법 제73조 제1항	3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5호	31
지정기부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포함,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지정	40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	4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42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기타	50

*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유형 : 기타, 코드 : 50)
실제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분) 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기부내용(⑨)에는 근로자가 기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금전 외 현물 기부의 경우 자산내역을 기재함
- 기부처(⑪상호, ⑫사업자등록번호 등)는 기부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며,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어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번호 등(⑫)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란을 기재하지 않음)
- 금액(⑬)란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며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기부자(⑭)란에는 기부금 지출자(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를 기재하며 기부자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관계란 작성시 참고사항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 기부금 지출자는 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자녀(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이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정확히 검토

⑮ 소계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 :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조특법73 ,⑮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⑮소계란은 기부금 종류별로 소계금액(공제금액)을 기재하며, 특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

⑯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기간	㉠ 이 월 액	㉡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	㉢ 이월액잔액(㉠-㉡)
2008	4,000,000	3,000,000	1,000,000
2009			3,000,000
합 계	4,000,000	3,000,000	4,000,000

▪ ⑯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기부한 당해 과세기간 및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3년 이내의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한도 초과한 이월액을 기재하여 관리

※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되,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공제한도액(50%적용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i 당해 과세기간의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은 "㉢이월액잔액"란에 기재
ii 전 연도의 ㉢이월액잔액은 당해연도의 ㉠이월액에 기재하며 과세기간은 기부년도를 기재
iii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은 ㉠이월액 중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
iv ⑮ 소계의 마. 금액은 당해 연도 기부금액이 아닌 당해연도 공제금액을 기재(이월액 중 당해연도 과세기간 공제금액 포함)

⑦ 표준공제

▣ ① ~ ⑥ 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① ~ ⑥ 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하며, 근로소득금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⑧ 특별공제 적용특례

▣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신청 없이 공제되는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일괄 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함

▣ 근로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그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제를 하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특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특별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방법

-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거나 소득공제 발급기관이 발급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13. 그 밖의 소득공제

①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의 종류 및 소득공제 한도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소득공제	공제자	근로자 본인에 한정	근로자 본인에 한정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소득공제 비율	불입액의 40%	불입액의 100%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공	
소득공제 한도		연 72만원 (불입액 기준 180만원)	연 300만원까지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

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득공제

구 분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
공제시기	연말정산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제한도	연 300만원	
제출서류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공	

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세대주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 주택마련저축(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공제신청 방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갈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④ 투자조합출자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조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10.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소득공제	투자금액 10% 소득공제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단, 2008.12.31 이전에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추징 및 예외사유	보유기간 5년미만 보유하고 매각시 공제세액 추징 다만,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추징하지 아니함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 ·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해산하는 경우

▣ 출자 또는 투자시 유의사항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제신청방법

▪ 당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의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첨부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자

출자 또는 투자 대상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기업구조조정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투자의 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개인투자조합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

▪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 납세조합의 해산
- 근로자의 퇴직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가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 · 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 · 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09.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td><td>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td></tr>
<tr><td>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td><td>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table>
<tr><th>대 상</th><th>요 건</th></tr>
<tr><td>배우자</td><td>•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td></tr>
<tr><td>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td><td>•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직계비속 제외)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예 외</td><td>근로자 및 동거가족(직계비속 · 입양자 제외)이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td></tr>
<tr><td>배 제</td><td>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td></tr>
<tr><td>판정시기</td><td>해당연도의 과세종료일</td></tr>
</table>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td></tr>
</table></td></tr>
<tr><td>공제금액</td><td>(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 20%) × 20%</td></tr>
<tr><td>공제한도</td><td>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tr>
</tabl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이라고 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보건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법,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스카장영업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발급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대상자	신용카드회원 · 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
발급 시기	대상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발급 · 통지할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을 조회 출력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사용 방법 안내

절 차	내 용
① 회원 가입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회원가입
②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로 신청
③ 현금영수증 발급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④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 →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인정 및 포상금 지급(15일 이내 신청한 경우 예산 범위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 • 인터넷에 의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 *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신청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첨부
⑤ 소득공제 신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

▣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내용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만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신용 · 직불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대상임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할 필요가 없음

▣ 소득공제 신청방법

- 근로자는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의 서류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 절차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수집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 ③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6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자사주 취득 관련 과세 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①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②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매입가액 등)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 가능(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정분부터 적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⑦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국내 금융시장 안정 및 주식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8.10.20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소득공제 대상 저축</td><td colspan="2">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td></tr>
<tr><td>불입한도</td><td colspan="2">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 (연 1,200만원)</td></tr>
<tr><td>계약기간</td><td colspan="2">3년 이상 의무가입
* 계약기간 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td></tr>
<tr><td>가입대상</td><td colspan="2">개인(거주자)</td></tr>
<tr><td>가입기한</td><td colspan="2">'08.10.20 ~ '09.12.31
*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 불입 가능</td></tr>
<tr><td>소득공제</td><td colspan="2">불입금액에 대해 다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table>
<tr><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20%</td><td>10%</td><td>5%</td></tr>
</table></td></tr>
<tr><td>비과세</td><td colspan="2">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td></tr>
<tr><td rowspan="2">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td><td>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td><td>실제 감면분</td></tr>
<tr><td>소득 공제분 추징</td><td>불입액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징
<table>
<tr><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5.0%</td><td>2.4%</td><td>1.2%</td></tr>
</table>
*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td></tr>
</table>

⑧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도입 배경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필요

▪ 소득공제 내용

– (기업)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기 업	근로자
요건	경영상 어려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상시근로자 유지요건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인원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만, 임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인원산정 방법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 (임금)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1인당 연간임금총액)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금액	
공제금액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공제한도		–	연 1천만원
일몰기한		'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1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시기 :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세액 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도금액 : 5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세액	사 례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20만원	11만원
		40만원	22만원
		50만원	27만5천원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0만원	30만5천원
		100만원	42만5천원
		125만원	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에 공제세액을 계산

▪ 따라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세액공제란에 별도 기재하지 않음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30]이 있는 때에는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함

30)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소득세액

국외원천소득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외국소득세액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또는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외국소득세액 범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
상대국에서 소득세 감면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원화환산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 공제한도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31)}}{\text{종합소득금액}}$$

-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 - [\text{면제 또는 세액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금액} \times \text{해당감면(면제)비율}]}{\text{종합소득금액}}$$

- 국외 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31)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월공제

▪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

▣ 외국납부세액의 특례

▪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을 한 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

❸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미분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

▣ 공제신청방법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련서류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 금융기관의 장(지점 · 대리점 · 영업소의 장을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❹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 정치자금세액공제 규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세액공제 신청방법

▪ 근로소득공제신청서에 세액공제란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기부정치자금을 기재

3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이란?

▣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갑종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32]을 포함하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봄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보험금

32) 199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99년 4월 1일 폐지)는 기업이 기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부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용주를 통하여 기금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이미 퇴직금전환금상당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았고,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납부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전환금 납부액을 비용처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장래 퇴직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선급받아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함

구 분	내 용
갑종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에 한함)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에 한함)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퇴직소득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④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봄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제외한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한함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봄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그 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수입시기

▣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원 칙	퇴직한 날
예 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잉여금 처분에 의한 퇴직급여의 귀속연도

▪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 (원칙)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시기 의제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그 퇴직급여액은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의 경우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지급시기 의제 규정 배제대상 퇴직소득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4.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과 세 체 계	비 고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급여의 45%) •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을 적용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6~35%) × 근속연수
퇴직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세액공제	2009.12.31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적용 • 산출세액의 30% (근속연수 × 24만원 한도)

5.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 과세대상 일시금 계산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구 분	과세대상 일시금 계산
20이상의 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이 사망일시금 한도[33] 초과하는 경우	총수령액 × $\frac{\text{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text{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그 밖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

* 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함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 퇴직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text{총수령액} \times \frac{\text{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text{총기여금 불입월수}}$$

33)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한도액 = MAX{최종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

$$\text{총수령액} \times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right]$$

▣ 퇴직소득 과세이연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과세이연계좌라 함

6. 퇴직소득공제

▣ 거주자에 대해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고,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다음의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기본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아래의 금액(“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며
- 주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 또한 주근무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근속연수 계산

-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사례별 근속연수의 계산

구 분	근속연수 계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으로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구 분	근속연수 계산	
퇴직한 공무원 등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등으로 임용·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퇴직금 정산 대상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각각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실제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7.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 당해연도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 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계산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퇴직시 수령가능 퇴직급여액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text{퇴직시 수령가능 퇴직급여액}}$$

▪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 과세이연을 선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 중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한 일시금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함)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text{퇴직금 전액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퇴직금}}{\text{퇴직금 전액}}$$

9.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구 분	징수세액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할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 2009년도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임

(세액공제 한도)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2009.1.1 ~ 12.31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이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11.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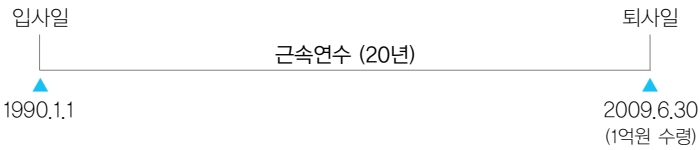

• 근로자가 2009.6.30 퇴직(1990.1.1 입사)하여, 퇴직급여 1억원(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2천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액 공제액 및 산출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비 고
퇴직급여		100,000,000	
소득공제(-)	기본공제	45,000,000	기본공제 : 100,000,000×45%
	근속연수	12,000,000	근속연수 : 12,000,000 (20년)
	소 계	△57,000,000	
과세표준		43,000,000	
산출세액		2,580,000	(43,000,000 / 20) × 세율(6%) × 20년
퇴직소득세액공제(-)		△774,000	2,580,000×30%(480만원* 한도)
납부(결정)세액		1,806,000	

* 세액공제한도 480만원 = 24만원 × 20년(근속연수)

사례 2

• 근로자가 2009.9.30에 퇴직(1990.1.1 입사)하고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1999.12.31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9.4.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지급받음

구 분		① 중간정산	② 실제퇴직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00,000,000	② 동일연도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산
소득공제(-)	기본공제	22,500,000	45,000,000	기본공제 : 퇴직급여 × 45% 근속연수 공제 적용 ① 중간정산 : 10년 ② 실제퇴직 : 20년
	근속연수	4,000,000	12,000,000	
	소 계	△26,500,000	△57,000,000	
과세표준		23,500,000	43,000,000	

구 분	① 중간정산	② 실제퇴직	비 고
연평균과표	2,350,000	2,150,000	과세표준 ÷ 근속연수
산출세액	1,410,000	2,580,000	연평균과표 × 세율(6%)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액공제(–)	0	△387,000	1,290,000* × 30%(240만원 한도) ※ 중간정산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기납부세액	0	1,410,000	중간정산 납부세액
납부(결정)세액	1,410,000	783,000	

* 퇴직소득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 : 1,290,000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text{각 퇴직소득별 산출세액 합계}}$$

$$= 2{,}580{,}000 \times \frac{1{,}410{,}000(\text{실제퇴직}^*)}{[1{,}410{,}000(\text{실제퇴직}^*) + 1{,}410{,}000(\text{중간정산})]}$$

* 중간정산 이후 받는 퇴직금(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 적용)만을 계산한 산출세액

사례 3*

- 근로자가 2009.6.30에 퇴직(2000.1.1 입사)하고 퇴직급여 2억원(퇴직금 5천만원과 명예퇴직수당 1억5천만원)을 지급받음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2005.12.31 기준)을 신청하여 2008.6.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음 (※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미 '08년도 원천징수되어 '09년도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합산대상이 아님)

구 분		법정퇴직 (4년)	법정외퇴직 (명예퇴직수당,10년)	합 계	비 고
퇴직급여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소득공제(-)	기본공제	22,500,000	67,500,000	90,000,000	기본공제 : 퇴직급여 × 45% 근속연수공제 법정퇴직 : 4년 적용 법정외퇴직 : 10년 적용 ※ 근속연수공제 한도 : 200만원한도[1]
	근속연수	1,200,000	800,000[2]	2,000,000	
	소계	△23,700,000	△68,300,000	△92,000,000	
과세표준		26,300,000	81,700,000	108,000,000	
연평균과표		6,575,000	8,170,000	14,745,000	과세표준 ÷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세액		516,903	642,296	1,159,200	연평균과표 합계 × 세율(16%) × 해당 연평균과표비율
산출세액		2,067,612	6,422,960	8,490,572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공제		620,283	1,926,888	2,547,171	산출세액 × 30%
		960,000	㉠ - ㉡	㉠ 2,400,000	세액공제 한도액[3]
		㉡ 620,283	1,779,717	2,400,000	세액공제 금액
납부(결정)세액		1,447,329	4,643,243	6,090,572	

* 1) 근속연수소득공제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공제 − 중간정산퇴직금 기공제 근속연수공제
  200만원 = 400만원(10년) − 200만원(중간정산 퇴직금 세액계산시 적용금액)
* 2) 법정외 근속연수 공제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법정퇴직 근속연수 공제)
* 3) 세액공제한도액(전체 한도 : 240만원 = 10년 × 24만원)
  - 법정퇴직 : 법정퇴직근속연수 × 24만원 → 960,000 = 4년 × 24만원
  - 법정외퇴직 한도액(㉠-㉡) : (법정외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 세액공제 한도 미달액
    → 1,779,717원 = (10년 − 4년) × 24만원 + (960,000원 − 620,283원)

12. 퇴직소득세액 정산

▣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음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및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및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13. 근로자퇴직등통지서 통보 절차

▣ 근로자퇴직등통지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2 서식) 내용

▪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통지서 통보 사유

▪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 통보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

▣ 통지서 수령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4. 과세이연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액을 환급

※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4서식)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5 서식)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함

15.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비치 · 기록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기록

▪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봄

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다음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의 경우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및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1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됨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18. 연금소득 과세개요

▣ 연금에 대한 과세 연혁

▪ 2001.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 공적연금에 속하는 국민연금 등은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불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34], 연금수령시 2002년 1월 1일 불입 또는 근로의 제공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의 종류 및 공제금액 한도

연금의 종류		공제항목	공제 한도	과세적용	공제율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공제	불입액 전액	'02년부터	'01년분은 불입액의 50% 공제, 과세제외
	직역연금		불입액 전액	'02년부터	
사적연금	퇴직연금*		전체 300만원 이내 금액	'05년부터	
	연금저축**	연금저축공제		'01년부터	'05년(240만원까지)

▪ 퇴직보험연금은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불입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연금이 포함됨

34) 소득활동 중에 불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나중에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부담금 불입시		(근로자) 수령시	
구분	세무상처리	수령방법	소득구분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인정	일시금	퇴직소득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연금	연금소득

• 퇴직연금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 포함

**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의 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도 72만원)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 제외되나 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연금종류별 소득구분

연금의 종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비 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소득	연금소득	유족 · 장애연금 비과세
	직역연금			유족 · 장해 · 상이연금 비과세
사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소득	연금소득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타소득*		2008.1.1 이후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 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서면1팀-1150, 2005.09.29),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국심 2005중4125, 2006.06.30)

▣ 연금소득금액 계산하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2006년 이후부터 적용, 공제한도는 900만원)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공제한도 : 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정산

연금의 종류		매월분 원천징수	정산방법
공적연금	국민연금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적용하여 원천징수	연말정산[35]
	직역연금		
사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	연금소득금액 × 5/100	종합소득세 신고[36]
	퇴직연금		
	연금저축		

▣ 세액의 계산

▪ 확정신고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공적연금 연말정산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표준공제(6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

– 공적연금 지급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공적연금 소득자는 당해연도 12.31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연금소득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당해 연금소득소득공제신고서는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봄

35)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이 경우 당해 연금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과 당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 제73조)

36)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5/10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세액 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연금소득자의 총연금액(연금소득의 합계액으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연금소득)

4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의 종류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

▣ 기타소득의 종류

-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 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37] 포함),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 ·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37)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사례금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1.1.1부터 시행)

  – 개당 ·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 골동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 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 보로금 및 기타 금품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 국제기관 ·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직장새마을운동 · 산업재해예방운동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포함)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2011.1.1부터 시행)

▪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1.1.1부터 시행)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3.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 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 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5.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금액임

▣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승마투표적중자 · 승자투표적중자 · 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 · 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 ·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 ·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 ·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 양도 · 교환 · 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인 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당해 소득에는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적용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원고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8.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에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가.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위의 가에서 규정하는 용역 제외)

▣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9.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내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 원고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변동

▪ 오류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38]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38) 의료보건용역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 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 저술가 ·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39].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39)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 ·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 장치 ·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 ·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 · 재단 · 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 · 요리 ·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 · 역사 · 기수 · 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 ·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 장려수당 ·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 · 번역 · 고증 · 속기 · 필경 · 타자 ·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 · 관상 ·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 1998. 12. 31.)
   (다) (삭제, 1998. 12. 31.)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2003. 12. 30.)
   (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함)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text{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text{요양급여비용} \times \frac{\text{의약품의 구입비용}}{\text{약제비총액}}$$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접대부, 댄서의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5. 지급명세서의 제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6.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다음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나"의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

참고 | 사업소득 연말정산신청 방법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지급시기 의제

▪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구 분	수입금액	연말정산 소득률	사업소득금액	
보 험 모집인	4천만원 이하분	214/1,000	4천만원 이하	수입금액 × 214/1,000
	4천만원 초과분	300/1,000	4천만원 초과	856만원 + (수입금액 − 4,000만원) × 300/1,000
방 문 판매원	4천만원 이하분	240/1,000	4천만원 이하	수입금액 × 240/1,000
	4천만원 초과분	336/1,000	4천만원 초과	960만원 + (수입금액 − 4,000만원) × 300/1,000

▪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text{연환산 수입금액}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times \frac{12}{\text{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text{소득금액} = \text{연환산 수입금액} \times \text{적용소득률} \times \frac{\text{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월수}}{12}$$

▣ 연말정산 시기

▪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 · 공제대상부양가족 ·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

▣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소득자에게 환급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6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1.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함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 이자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이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
-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것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

–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

3. 배당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

▣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봄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집합투자기구

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다만, 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 분배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음(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 포함)

나. “가”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세

구 분	과세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

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과세 제외되는 손익

▪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함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①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봄

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함

5. 비과세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비 고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	소득세법 § 12	
장기(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 25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배당	조특법 § 13	'09.12.31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배당	조특법 § 22	'09.12.31이전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소득 발생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1,200만원 이내)	배당	조특법 § 66	'09.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연 1,200만원 이내)	배당	조특법 § 67	'09.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농업소득 발생분)	배당	조특법 § 68	'09.12.31까지
개인연금저축	이자	조특법 § 86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 87	소득공제
생계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 88의 2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특법 § 88의 4	
조합 등 출자금(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	조특법 § 88의 5	
조합 등 예탁금	이자	조특법 § 89의 3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 (주권상장이후 3년이상,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 3천만원 이하 보유)	배당	조특법 § 91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비 고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분	배당	조특법 §91의 8	
장기주식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 91의 9	소득공제 '09.12.31까지 가입
장기회사채형저축	이자·배당	조특법 § 91의 10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이자·배당	조특법 § 91의 11	'09.12.31까지 가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7조*	

* **법률 제4806호(1994.12.22) 제1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 평가 또는 ①과 ②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③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 계산

-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text{유가증권 양도차익} = \text{총배당금액} \times \frac{\text{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text{총이익의 누적액}}$$

-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거나, 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
-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 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함

7. 세금우대종합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 · 공제 · 보험 · 증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구 분	계약금액 총액
20세 이상인자	1인당 1천만원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1인당 3천만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과세특례

-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0분의 95('09.12.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9.5(9)%세율 적용]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14%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
- 다만,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금융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이자소득	수입시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 · 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따라 원본이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함

9. 금융소득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봄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 이하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에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10. 소득세 원천징수

▣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외)을 지급하는 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11. 법인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포함,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내국법인(금융기관 제외)[40]에게 지급하는 자

40)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는 것에 한정)
1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
1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및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
1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
- 반기납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00분의 14

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봄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채권 등의 매도)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

13.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및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이 경우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14.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및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7장

비거주자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임

▪ 과세범위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 범위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거주자 판정의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분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2. 과세대상소득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 ·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 열거 · 규정하는 의의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종류별로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여 구분 · 열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table>
<tr><th colspan="2">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th><th>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th><th>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th><th>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th></tr>
<tr><td>1호</td><td>이 자 소 득</td><td rowspan="9">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td><td rowspan="8">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td><td>20(채권이자 : 14%)</td></tr>
<tr><td>2호</td><td>배 당 소 득</td><td>20</td></tr>
<tr><td>3호</td><td>부 동 산 소 득</td><td>–</td></tr>
<tr><td>4호</td><td>선박등임대소득</td><td>2</td></tr>
<tr><td>5호</td><td>사 업 소 득</td><td>2</td></tr>
<tr><td>11호</td><td>사 용 료 소 득</td><td>20</td></tr>
<tr><td>12호</td><td>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td><td>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td></tr>
<tr><td>13호</td><td>기 타 소 득</td><td>20</td></tr>
<tr><td>7호</td><td>근 로 소 득</td><td>거주자와 동일</td></tr>
<tr><td>6호</td><td>인적용역소득</td><td>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td><td>20</td></tr>
<tr><td>8호</td><td>퇴 직 소 득</td><td colspan="2">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td><td>거주자와 동일</td></tr>
<tr><td>9호</td><td>양 도 소 득</td><td>거주자와 동일</td><td>예납적원천징수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td><td>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td></tr>
</table>

▪ 적용시 주의사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 원천징수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
- 건축 ·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 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 하는 것임.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소득세법 §121 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상)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 · 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9호	사 용 료 소 득			20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11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예납적 · 완납적 선택)	20
7호	양 도 소 득		종합과세, 신고 · 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3호	부 동 산 소 득			–

▪ 적용시 주의사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 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대가 지급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 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이자소득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거주자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납세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인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까지의 규정에 정한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5.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시기

-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되는 때
-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당해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6.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text{과세표준} = \text{지급금액}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임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함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7.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따라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
-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

▣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9.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 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 특례

▪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11호 · 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 제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8장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 전자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 홈택스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1) 세금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작성프로그램에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변환방식]이 있습니다.

▣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① 정기분 신고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 :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③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①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에 한하여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신고서 및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자료에 한하여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②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검색하여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휴·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분납부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에 연결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분납부의 경우 세금신고한 세액을 자동조회하여 납부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9:00~22:00(토요일, 공휴일은 이용불가)

*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

▪ 주민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원천세 홈택스 신고 이용안내

주요 메뉴

• 신고 (작성방식과 변환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 직접 작성·전송방식으로 신고 [작성방식]

① [세금신고·신고분납부-원천세]화면의 [신고서작성하기] 클릭 → ② 신고서 입력 → ③ 오류검증 → ④ 전송 → ⑤ 접수증 확인 → ⑥ 신고서(납부서) 출력

– 회계프로그램 생성파일 변환·전송방식으로 신고 [변환방식]

① 바탕화면의 [원천세 변환] 아이콘 클릭 → ② 오류검증 및 변환 → ③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원천세]화면의 [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전송 → ④ 접수증 확인

• 신고결과 확인 :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한 내역을 확인

1) 작성방식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① 신고유형(정기, 수정, 기한후)을 선택한 후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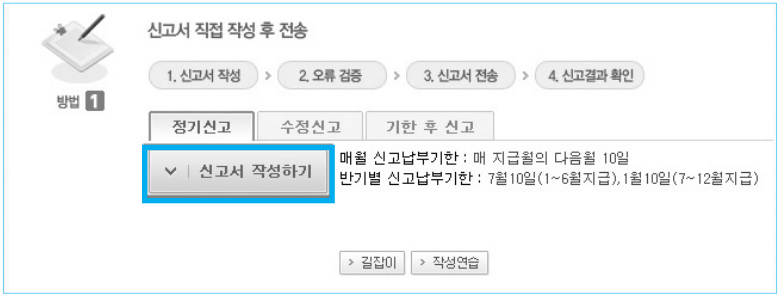

②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 다음]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작성순서)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 환급세액조정 →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 부표,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 입력 후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작성프로그램에 입력한 신고서 내역은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③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내역이 조회되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메세지 예시

A50(이자소득) + A60(배당소득)의 항목별 내용이 신고서부표 화면의 항목별 C30(이자배당소득계) + C61(비거주자이자소득) + C62(비거주자배당소득)와 같지 않습니다.

→ 각 항목별 A50 + A60은 C30 + C61 + C62과 같아야 합니다. 각 항목별 작성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이며 작성내용이 동일하도록 수정합니다.

④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보내기 화면이 팝업으로 뜨며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면 PC에 저장된 신고서가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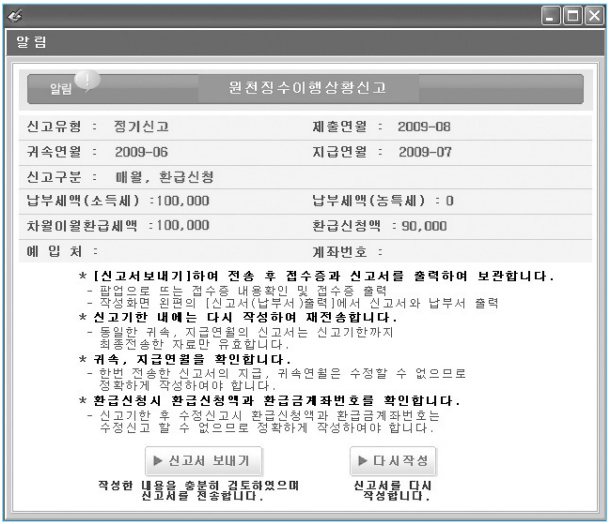

⑤ [신고서보내기] 하여 발급되는 접수증의 접수결과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⑥ 왼편 메뉴 중 [신고서(납부서)출력]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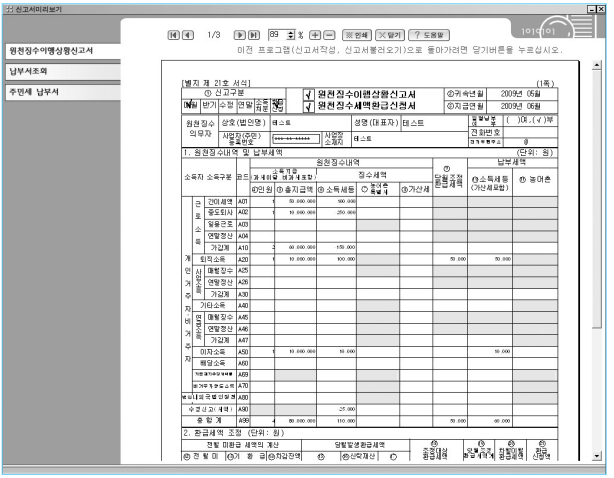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서조회], [주민세납부서] 메뉴가 없습니다.
- 납부서는 소득별로 각각 발행되며 저축해지추징세액은 갑근세로 발행됩니다.
- 주민세 납부서에는 기본사항만 출력됩니다.

2)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입력하여 생성된 파일 변환하여 전송]

① 컴퓨터 바탕화면의 [원천세 변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서식개정 등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버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② 변환할 파일선택 후 [변환하기]를 클릭하여 오류검증을 거쳐 정상 변환합니다.

- 홈택스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아닌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야하며 정확히 입력해야 변환한 파일이 전송목록에 조회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왼쪽 상단의 [나의정보관리] → [나의회원정보] 메뉴에서 사용자아이디(ID)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신고-원천세] 화면에서 [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하면 전송목록이 조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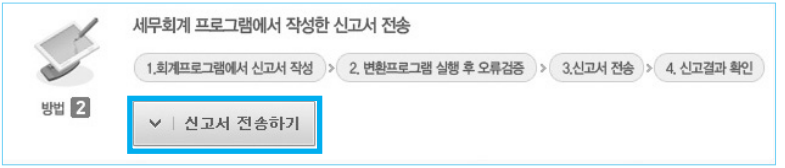

- 전송할 파일을 선택 후 [전송]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전송완료 후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파일을 모두 삭제하기 위해서는 [PC신고자료 삭제]를 클릭합니다.

④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결과]의 접수건수, [접수증]을 클릭하여 접수증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3) 신고결과 확인

①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원천세]의 [STEP2신고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요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연월	귀속연월	지급연월	납부세액(소득세)	차월이월환급세액	신고구분	신고번호				접수구분	접수증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세액(농특세)	환급신청액	신고유형	연말	소득처분	부표	환급신청	신고시각	
2009-07	2009-05	2009-06	60,000	325,000	매월	20090710-83070446				정상	
테스트		***-**-***	0	200,000	정기	N	N	Y	Y	2009-07-10 16:23	
2009-07	2009-02	2009-06	202,000	0	매월	20090710-83070438				정상	
국세청테스트		***-**-***	10,000	0	정기	N	N	Y	N	2009-07-10 15:56	

- 신고서 전송 직후 신고요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구분이 정상 여부와 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 세액 등의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보안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재전송합니다.

③ 홈택스 [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원천세)]에서는 신고 약 1개월 후 전자신고분과 서면신고분을 서식형태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고내역조회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원천세 전자신고 · 납부 Q&A

원천세 전자신고 개요

▣ 원천세의 경우 귀속연월이나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다른 신고서로 접수됩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원천세 – STEP2신고확인]에서 요약내역과 접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약 1개월 후에는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원천세)]에서 서식형태로 조회 가능합니다.

▣ 잘못된 신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

▪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도우미 –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삭제요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를 했는데 다른 PC에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 신고서를 입력했던 PC에 저장되므로 입력했던 PC에서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 원천세 신고시 각 세목별로 납부서가 출력되나, 수정신고세액 납부서는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사이트(www.nts.go.kr)의 [신고납부 – 납부안내 – 납부서작성요령]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와 조회서비스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는 아이디 로그인만으로도 가능)

▣ 신고서 전송 후 접수증이나, STEP2신고확인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프로그램설치]를 클릭하여 [로그인 및 보안]탭의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재부팅하여 다시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윈도우 비스타사용자인데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윈도우 비스타는 보안등급이 높아 로그인시 관리자로 로그인하거나 익스플로러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눌러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해야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 폐업자도 원천세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 폐업신고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작성방식에 의해 원천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납부자는 언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 반기별 납부자는 매년 1월, 7월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3월 제출, 폐업신고한 사업자인 경우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작성방식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

▣ 반기별납부승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사업자기본사항입력]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구분(매월납부/반기납부)이 사업자정보의 신고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이미 작성내용이 있어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서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신고서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① PC에 저장된 모든 신고서가 삭제되므로 필요한 신고서는 미리 출력합니다.

② 작성프로그램 화면 왼쪽 아래의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PC신고자료삭제]를 클릭하면 PC에 저장된 신고서가 삭제됩니다.

③ [신고서작성하기] 다시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 신고해야할 소득을 입력하는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사업자기본사항입력]화면의 소득종류선택에서 신고해야 할 소득에 체크합니다.

▣ [신고서부표입력]화면에서 "징수세액 – 조정환급세액은 납부세액과 같아야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징수세액 소득세등과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세등에 세액을 모두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가 맞아야 합니다.

▣ [신고서(납부서)출력]메뉴에서 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 원천세 신고서의 A99 납부세액 – 소득세등의 입력내용이 0일 경우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납부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 [신고서납부서출력]메뉴에서 주민세납부서에 세액이 빈칸입니다.

▪ 주민세 납부서는 기본사항만 출력되며 세액은 직접 기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저축해지추징세액 납부서는 세목이 갑종근로소득으로 발행됩니다.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입력하여 생성된 파일 변환하여 전송]

▣ 신고서가 정상 변환되었는데 전송목록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변환시 입력하는 홈택스아이디를 확인하여 다시 변환합니다. 홈택스 아이디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왼쪽 상단의 나의회원정보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로그인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아닌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전자납부

▣ 신고서를 전송했는데 [STEP3세금납부] 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 신고분납부] 메뉴에서 납부할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세액은 [자진납부]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분납부] 메뉴에는 신고마감일까지만 조회되며 마감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합니다.

▣ 같은 금액을 두 번 전자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은행의 동일한 계좌에서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전자납부시 입력내용(납부기한, 납세자번호, 서코드, 세목코드, 납부금액)이 동일한 경우 1일 1회만 납부 가능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란?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제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1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1종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순번	서식명	서식 번호
1	갑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1)
2	을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3)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1	별지 제24호서식(2)(제1쪽)
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2	별지 제24호서식(2)(제4쪽)
5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2)
6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3호서식(3)
7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4)
8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5)
9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1)
10	의료비 지급명세서	
11	기부금 명세서	

참고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5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때 당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1

퇴직시, 중간정산시, 최초 중간정산한 그 해에 퇴직하는 경우로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2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중간정산한 자가 중간정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후 연도에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1)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단,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2)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 공휴일 포함)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

1) 작성방식

일반 사용자가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 후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④ 지급명세서 작성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눌러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완료후에는 [오류검증]을 눌러 오류여부를 검사하고 오류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지급명세서 보내기]버튼을 눌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2)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에 게시된 「2009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합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지급명세서 작성 및 파일생성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

홈택스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산매체파일을 변환합니다.

※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홈택스 프로그램설치]의 과세자료제출 변환프로그램 [지급명세서]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④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발급 받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전송하기]를 눌러 전송화면에 들어간 후 전자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1) 개요

▣ 수시·일회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 **매월(수시) 분할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2009년 10월에는 근로·퇴직소득지급명세서까지 확대 예정

2) 서비스 제공시기

▣ 매년 개정서식을 조기에 반영(4~5월)하여 서비스 개시한 후 제출기한(2월말)까지 **매월 운영**

▪ 매월 1일 ~ 매월 말까지 **월단위 마감**

3)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출대상을 유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현행 방식은 '1'을 선택**하고 휴·폐업시 수시 제출하는 경우는 '2'를, 매월(수시) 분할 제출하는 경우는 '3'을 선택합니다.

▪ '2' 또는 '3'로 설정한 경우 **매월**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하며(**월간 접수증 발급 : 해당귀속년도에 다수의 접수증**)

▪ '1'로 설정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며 **2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연간 접수증 발급 : 해당귀속년도에 1장의 접수증**)

▣ 변환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A레코드 제출대상기간코드가 '2' 또는 '3'인 경우 제출연월일이 현재 연월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기간코드가 '2' 또는 '3'으로 제출할 때에는 제출연월을 현재 연월로 설정하여 파일을 생성해야합니다.

* 제출대상기간코드가 '1'인 경우는 제출연월일에 상관없이 전송가능

▣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월별) 분할제출]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되므로 제출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전체 제출자료를 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에 한해 유효한 제출로 인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 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 지급명세서를 각각 전송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를 합쳐서 전송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제출 – 전자신고삭제요청서]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한내 전송한 자료를 수정하려면 해당 자료를 수정한 후 전체 자료를 다시 전송합니다. 제출기한 후에는 홈택스로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전송)후에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제출결과(접수건수, 금액 등)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5) 2009년에 휴·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2009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 지급명세서 메뉴
- 원천징수영수증 인쇄하는 방법
- 제출결과 확인 및 접수증 인쇄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지급명세서 메뉴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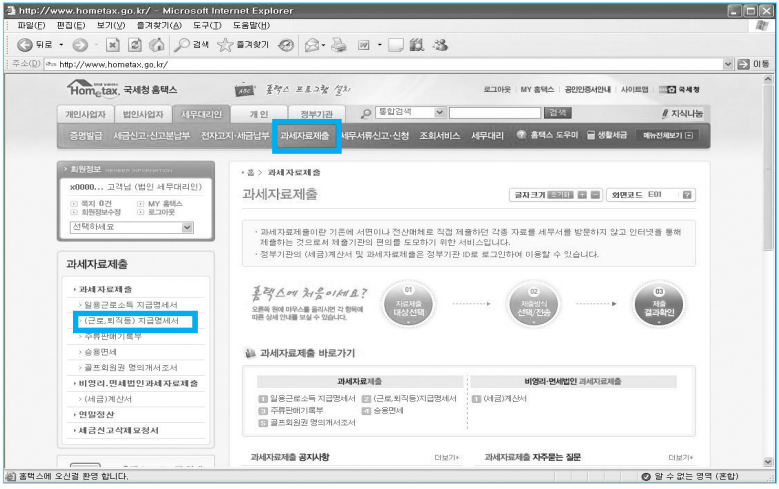

② 작성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방법1 메뉴의 해당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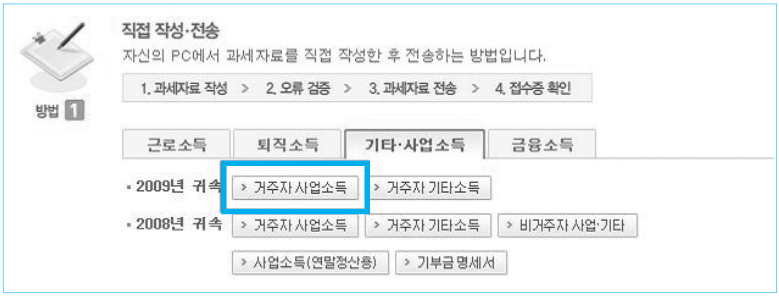

③ 변환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변환프로그램 설치후 변환하여 방법2 메뉴의 [지급명세서전송하기]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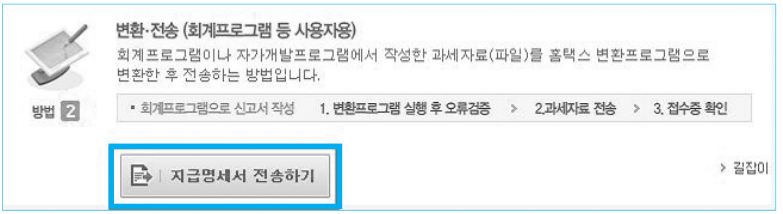

원천징수영수증 인쇄하는 방법

①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이미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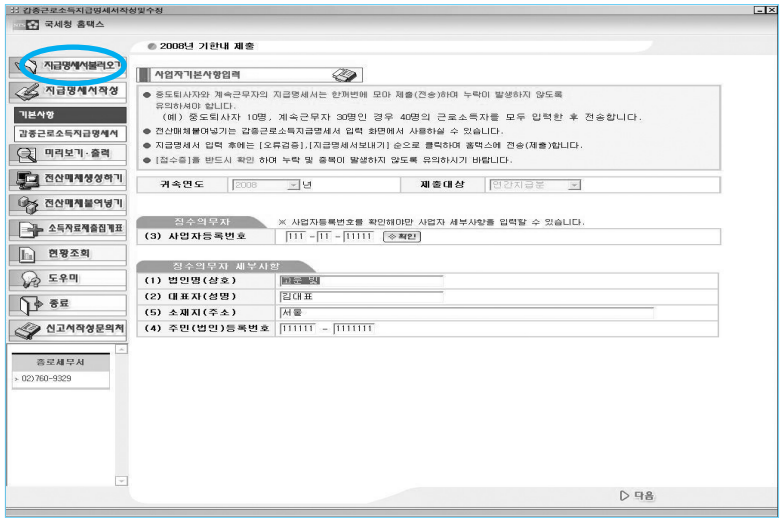

② 목록창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한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③ [미리보기 · 인쇄]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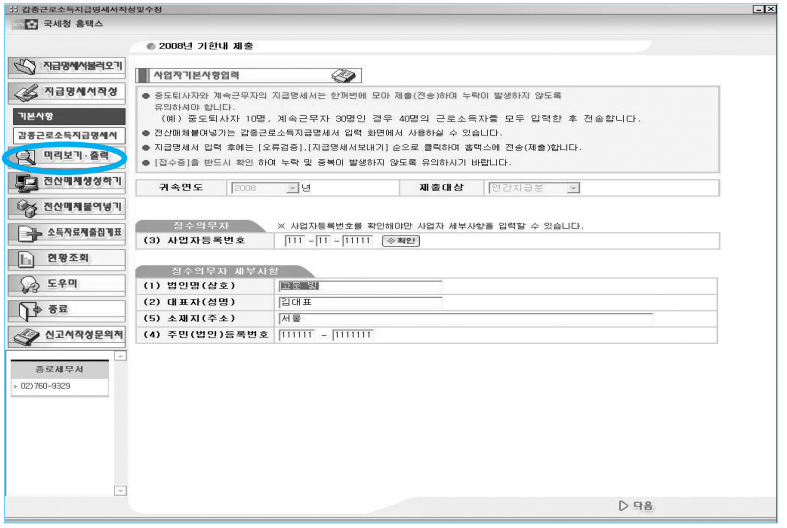

④ 서식형태로 조회되며 왼쪽메뉴를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출결과 확인 및 접수증 인쇄하는 방법

①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귀속년도, 제출일자, 소득구분 등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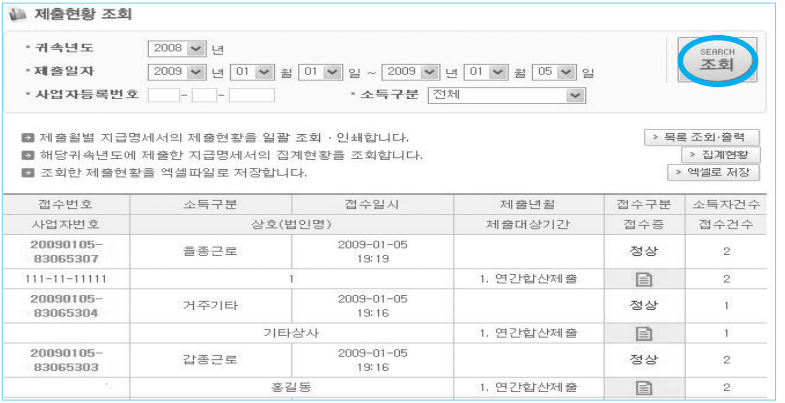

③ 접수구분의 정상여부와 접수건수, 지급총액 등 접수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증은 을 클릭하여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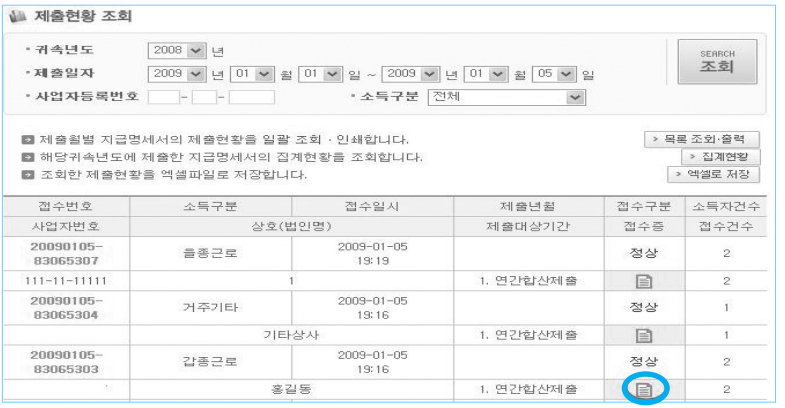

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Q1 지급명세서를 변환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변환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홈택스프로그램설치]에서 [과세자료]의 과세자료제출변환 프로그램 중 [지급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지급명세서변환]아이콘이 생성됩니다.

Q2 변환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환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후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제거]에서 [지급명세서변환]을 클릭하여 제거한 후 변환프로그램을 재설치합니다.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방법2의 [지급명세서 전송하기]를 클릭하면 변환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Q3 dax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검색조건을 DAX로 입력한후 [검색]를 클릭합니다 자료번호 387번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Q4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가 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 전체를 모아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중도퇴사자 10명, 계속근무자 30명이라면 40명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중도퇴사자 10명, 계속근무자 30명을 따로 작성해서 각각 전송하면 마지막에 전송한 내역만 남아 결과적으로 30건만 전송한 것으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득별로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자료를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모아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제출은 여러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Q6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전자신고삭제요청서]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홈택스 전자제출은 여러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므로 소득별로 전체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8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본점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징수의무자를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Q9 갑종, 퇴직,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나요?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으며 3종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별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소득별로 각각 전송합니다.

Q10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는데 제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제출현황조회]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후에는 [제출현황조회]에서 소득자 건수, 금액 등이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1 지급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방식의 경우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불러오기]로 기존에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미리보기 · 출력]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소득자보관용, 발행자보관용) 서식형태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변환방식의 경우에는 서식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Q12 변환방식으로 변환 후 [전송하러가기]를 했는데 전송목록에 자료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세서 자료변환시 [홈택스 ID]를 입력하는데 홈택스 아이디를 대소문자 구별하여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니며 홈택스 [로그인] – [나의정보관리 – 나의회원정보]의 사용자아이디(ID)와 동일하게 입력해야만 조회가 됩니다.
또한, 신고파일생성년월은 사용자PC 날짜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PC의 날짜가 현재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변환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Q13 대량자료를 변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전자 제출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가 많을 경우 사용자 PC사양에 따라 변환 · 전송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자료량이 큰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4 기부금명세서를 변환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갑종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갑종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체를 모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자가 갑종근로자 10건, 사업소득자(사업연말) 15건이면 25건을 하나의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합니다.

Q1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후 제출이나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한 재제출은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16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각각 전산매체로 만들었으며 2개 파일을 합쳐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작성메뉴중 [전산매체붙여넣기]를 이용하여 2개의 파일을 합쳐서 제출(전송)하시면 됩니다. 단, 2개의 전산매체파일은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업자기본사항입력] 완료후에 [전산매체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Q17 지급명세서 전송을 완료했는데 입력한 파일을 보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면 입력한 PC에 자료가 저장됩니다. 파일명은 C:\EOS\efile*로 시작하며 파일을 이동식디스크 등에 복사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입력중에 다른 PC에서 입력하고자 할때에서 efile* 시작하는 파일을 복사하여 C:\EOS폴더 아래에 복사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별 파일명
  - 연말정산 통합 프로그램(갑종) : efileos_2008.db
  - 갑종, 을종, 의료비, 기부금, 사업(연말정산용) : efileoc_2008.db
  - 퇴직, 퇴직중간 : efileoe_2008.db
  - 거주자사업, 거주자기타, 비거주사업기타 : efileof_2008.db
  - 이자배당 : efileob_2008.db

Q18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전산매체생성한 것을 다시 붙여넣기 했는데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파일내용에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산매체붙여넣기]를 하면 주소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주소항목은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Q19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서 [전산매체붙여넣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 반복해서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동일소득자 주민번호로 여러건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전산매체붙여넣기]를 여러번 하면 그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자료가 누적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자료인 경우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Q20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했는데 [제출확인]에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설치한후 지급명세서를 다시 전송하여 [제출확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 삭제 및 재설치 방법]

① 홈택스 [과세자료제출]의 왼쪽 메뉴의 [이용안내]에서 [프로그램설치] 클릭
② [보안프로그램삭제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기
③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하기
④ [보안프로그램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삭제
⑤ [보안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재설치

Q21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세 세율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이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세율은 소수점 입력이 안 되므로 세율란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을 기재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각각 배분하여 입력합니다.

Q22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 때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은 지급명세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Q23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색 인

간병인 | 70
간이세액표 | 57
갑종근로소득 | 44
강사 | 42
개별주택가격 | 79, 88
개인연금 | 87
경정청구 | 39
공동주택가격 | 79, 88
공익법인기부신탁 | 85
공인인증서 | 18
과세이연 | 109, 119
과세최저한 | 20, 131, 134
교육비 | 71
국내원천소득 | 164
국민주택 | 76, 88
국민주택규모 | 77
국외근로 | 54
근로소득 | 42
근로소득세액공제 | 98
근속연수 | 109
금융소득 | 143
급식비 | 72
기본공제 | 61
기부금 | 81
기부금명세서 | 83
기부정치자금 | 102
기준시가 | 77, 79, 88
기준환율 | 55
기타소득 | 126, 131
납부 | 91
납부불성실가산세 | 37
납부서 | 18
납세지 | 35
노인장기요양보험 | 67, 70
농어촌특별세법 | 13
다자녀 | 58, 66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46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 46
모집수당 | 140
반기별 납부 | 28, 29, 30
방문판매 | 140
배당소득 | 146
벽지수당 | 52
보육수당 | 50
보험료 | 45, 46, 67
보험차익 | 143
본점일괄납부 | 36
부당해고 | 43
비거주자 | 44, 162
비과세 | 50, 51
비영업대금의 이익 | 145
사내근로복지기금 | 46
사업소득 | 136
사이닝보너스 | 43
사택 | 45
상시 고용인원 | 28
상여 | 58
상환기간 | 77
성과급 | 43
세율 | 112. 133, 157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 87
소득 구분 | 43, 123

소액부징수 | 20
원천징수세율 | 19
수입시기 | 56, 106, 130, 154, 155
식사대 | 50
신고불성실가산세 | 37
신용카드 | 93
실비변상적 | 51
야간근로수당 | 53
연구활동비 | 52
연금보험료 | 66
연금소득 | 122
연금저축공제 | 87
연말정산간소화 | 10
연수생 | 43
외국납부세액공제 | 151
외국인근로자 | 50
우리사주 출연금 | 94
원천징수 시기 | 21
월정액급여 | 53, 54
유가증권 | 169
유족보상금 | 50
을종근로소득 | 44
의료비 | 68
이자소득 | 144
일용근로 | 44
일용근로소득 | 57
일직료 | 5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76
장애인 | 65, 67, 75
전자신고 | 18
제한세율 | 170
조정환급 | 25
종교단체 | 81
주민세 | 15
주식매수선택권 | 47
주택마련저축 | 76, 88
주택임차차입금 | 76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4, 100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14
중증환자 | 65
증빙서류 | 86
지급명세서불성실 | 38
지급시기 의제 | 21, 106, 107, 139, 140, 156
지로 | 91
지정기부금 | 82
체육시설 | 77
퇴직보험 | 46
퇴직소득 | 103
퇴직소득공제 | 109
퇴직연금 | 46, 123
퇴직위로금 | 42, 104
퇴직일시금신탁 | 46
투자신탁 | 150
투자조합출자공제 | 89
특별공제 | 67
특별공제 적용특례 | 86
표준공제 | 85
필요경비 | 131
학자금 | 50, 74
해고예고수당 | 104
현금영수증 | 91, 93
현실적인 퇴직 | 105
환급 신청분 | 31
환급신청 | 26

이 책자의 내용은 2009. 10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시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귀속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발 행 일 자	2009년 11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원천세과장 이 은 항 행정사무관 한 지 웅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임 인 정 전산조사관 김 효 진 전산조사관 정 혜 영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